



제268회 임시회
2008. 3. 4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8년 2월 21일
- 회부일자 : 2008년 2월 25일

□ 제안이유

- 21세기 국제화·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 국제교육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교류활동을 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충청북도교육청의 국제교육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나. "교류협력"이라 함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함. (안 제2조)
- 다. 교류협력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야 함. (안 제4조)
- 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안 제7조)

바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안 제8조)

사.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음. (안 제9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시 교류대상, 체결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호 규정에 의거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 임 :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